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9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:전재수·허 영·추미애

위성곤 • 이학영 • 강유정

김재원 • 이기헌 • 민형배

채현일 • 박홍배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,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 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, 신혼부부가 재정 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,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 는 것임(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5조(혼인세액공제)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(이하 이 조에서 "혼인세액공제"라 한다) 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③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해당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  - ④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해당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

개월이 되는 날까지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.

⑤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한다"를 "하고,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혼인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 및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95조(혼인세액공제) ① 거주자 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 0만원을 공제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(이 한 이 조에서 "혼인세액공제" 라 한다)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 자가 해당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 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

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~ ⑨ (생 략)

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(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)을 한도로 <u>한다</u>. 다만,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종합소득
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④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거주
자가 해당 혼인이 무효가 된
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
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
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
날까지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
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
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
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
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한다.
⑤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과 관
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∥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
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~ ⑨
(현행과 같음)
<b>(1)</b>

-----<u>하고, 혼인한 날이</u>

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00만원

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	<u>을 한도로 한다</u>
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	
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	
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.	
	,
1. • 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